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50
----------	-----

2017. 12. 14.(목)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7년 11월 21일

다. 회부일자: 2017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2017년 12월 1일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검정고시수수료를 삭제(제2조제1항제3)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삭제  
(수수료 징수금액에 관한 별표 1)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광주)

- 검정고시 제도는 정상적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자에게 일정 학력의 검정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수수료	1. 응시수수료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 제</li> <li>2. (생 략)</li> <li>3. <u>검정고시수수료</u></li> <li>4. 삭 제</li> <li>5. (생 략)</li> </ol> <p>② (생 략)</p>	<p>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p> <p>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현행과 같음)</li> <li>3. &lt;삭 제&gt;</li> <li>5.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u>수수료 징수금액</u>(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종류</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45%;">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td> <td>1. 응시수수 가. 일반시험</td> <td>1인당</td> <td>25,000</td> </tr> <tr> <td>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td> <td>1인당</td> <td>35,000</td> </tr> <tr> <td>2. 검정고시 수수료</td> <td>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td> <td>1인당</td> <td>1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2. 검정고시 수수료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p>[별표 1] <u>수수료 징수금액</u>(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종류</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45%;">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td> <td>1. 응시수수 가. 일반시험</td> <td>1인당</td> <td>25,000</td> </tr> <tr> <td>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td> <td>1인당</td> <td>35,000</td> </tr> <tr> <td>&lt;삭제&gt;</td> <td>&lt;삭제&gt;</td> <td>&lt;삭제&gt;</td> <td>&lt;삭제&gt;</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2. 검정고시 수수료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1인당	10,000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